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설업 발주자 산재예방 조치의무 조기안착 방안 시달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2.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20.1.16시행)에 따라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규정이 새롭게 시행되었습니다.
3. 이에 동 제도의 빠른 안착을 위해 붙임과 같이 조기안착 방안을 시달하니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이 방안에 따라 홍보·안내·점검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업 발주자 산재예방 조치의무 조기안착 방안 1부.

2.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1부. 끝.

고용노동부장관

수신자 지방관서(산재예방지도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사업총괄본부, 산재예방소통실)



주무관 김영남 행정사무관 윤병민 산업안전과장 전결 2021. 1. 6. 박종일

협조자

시행 산업안전과-63 (2021. 1. 6.) 접수

우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안전 / www.moel.go.kr
과(어진동 581 고용노동부)

전화번호 044-202-7728 팩스번호 044-202-8092 / kyn589@korea.kr / 비공개(5)